

수원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19가단127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나6106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19가단12721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이철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월

담당변호사 박아영, 류인규

변 론 종 결 2020. 11. 10.

판 결 선 고 2021. 2.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16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인인 피고로부터 C를 소개받았고,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6. 2. 26.부터 2016. 11. 28.까지 C의 배우자인 D으로부터 합계 9,076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표 1]

순번	차용일	차용금(원)	비고(입금자)	순번	차용일	차용금(원)	비고(입금자)
1	2016. 2. 26.	12,000,000	D	5	2016. 7. 29.	15,000,000	D
2	2016. 2. 29.	25,960,000	D	6	2016. 9. 20.	9,000,000	C
3	2016. 3. 21.	5,000,000	D	7	2016. 11. 28.	10,000,000	D
4	2016. 3. 25.	13,800,000	D	합계	90,760,000		

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1. 25. 250만 원, 2016. 12. 2. 28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원고는 D으로부터 [표 1]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오산시 E 전 248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29. D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이 사건 제1토지 및 원고 소유의 오산시 F 답 105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25. D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6. 11. 23.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6. 3. 30.부터 2017. 10. 29.까지 합계 4,696만 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였다.

[표 2]

순번	입금일	입금액(원)	순번	입금일	입금액(원)
1	2016. 3. 30.	1,800,000	11	2016. 10. 9.	3,040,000
2	2016. 4. 26.	1,000,000	12	2016. 10. 28.	2,040,000
3	2016. 4. 29.	1,800,000	13	2016. 10. 31.	2,000,000
4	2016. 5. 27.	1,000,000	14	2016. 11. 28.	4,750,000
5	2016. 6. 27.	1,500,000	15	2016. 11. 30.	1,400,000
6	2016. 6. 28.	3,000,000	16	2017. 1. 9.	2,500,000
7	2016. 6. 29.	1,000,000	17	2017. 1. 11.	1,490,000
8	2016. 6. 30.	1,800,000	18	2017. 1. 11.	760,000
9	2016. 7. 31.	3,040,000	19	2017. 10. 29.	10,000,000
10	2016. 9. 2.	3,040,000	합계	46,960,000	

마. 원고는 2017. 7. 12. G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도하고 D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G으로 하여금 매매대금 중 6,000만 원을 직접 D에게 송금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G은 같은 날 D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D은 같은 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D은 수원지방법원 H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청구금액 8,000만 원)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사. 1) 원고는 2017. 12. 27.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40098호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4. 5.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표 3]

원고는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D으로부터 2016. 2. 26.부터 2016. 12. 2.까지 총 9,606만 원¹⁾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연 25%의 최고이자율에 의한 2017. 12. 27.까지의 이자를 계산하면 29,998,285원이 된다. 원고는 2016. 3. 30.부터 2017. 1. 11.까지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총 3,696만 원²⁾의 이자를 D에게 지급하였는바, 그 초과액 6,961,715원(= 3,696만 원 - 29,998,285원)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어 그 원본 잔액은 89,098,285원(= 9,606만 원 - 6,961,715원)이 되었다. 또한 원고는 D에게 위 2017. 7. 12.자 변제금 6,000만 원 외에 2017. 10. 29.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금 중 일부로 1,000만 원³⁾을 변제하고, 2017. 12. 27. D의 예금계좌에 1,91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원금 중 잔액인 19,098,285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차용원리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D은 수원지방법원 2018나5109호로 항소하였고⁴⁾, 위 항소심 법원은 [표 3] 기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6. 3. 30.부터 2017. 1. 11.까지 수차에 걸쳐 피고의 예금계좌에 총 3,696만 원을 원고의 D에 대한 차용금 이자 명목의 돈으로 송금하였다거나 2017. 10. 29. 피고의 예금계좌에 원고의 D에 대한 차용금 원금 중 일부의 변제를 위해 1,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D이 피고에게 위 돈의 변제수령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D에 대한 차용원리금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12. 6.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2019. 5. 9. D과 사이에 채권채무 잔액 및 선행소송 제반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8,500만 원으로 합의하고 D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은 2019. 5. 9.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2019. 5. 10.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D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받을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3,696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7. 10. 29. 피고가 D에게 전달하겠다고 한 말을 믿고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를 대신하여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1,000만 원도 D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가사 피고가 D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및 원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원리금 채무로 총 1억 4,500만 원(= 2017. 7. 12.자 6,000만 원 + 2019. 5. 9.자 8,500만 원)을 D에게 직접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4,696만 원(= 3,696만 원 + 1,000만 원)을 보유할 아무런 법률상 권원이 없다. 다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530만 원(= 2016. 11. 25.자 250만 원 + 2016. 12. 2.자 28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96만 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5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16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급부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에게 2016. 3. 30.부터 2017. 10. 29.까지 합계 4,696만 원을 입금한 사실,
선형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위 4,696만 원이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및
원금의 변제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6. 3. 30.부터 2017. 1. 11.까지
피고에게 입금한 3,696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를 횡령 혐의(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D에 대한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로 3,696만 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를 즉시 D에게 전달해야 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위 돈이 원고의 D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거나 피고가 D, C로부터 대리수령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9. 6.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② 위 형사고소 사건의 수사기관
조사시 원고는 피고와 전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원고는
선형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차용금 530만 원을 D에 대한 차용금으로 주장하였고 선형소송의 항소심
법원도 그와 같이 사실인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개인적으로
2차례 53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을 반복하였고,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여 주체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원고는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원고와 피고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전화통화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이 예금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530만 원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선형소송의 항소심 법원도 원고가 2016. 3. 30.부터
2017. 1. 11.까지 피고에게 입금한 위 3,696만 원이 원고의 D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 명목의
돈이라거나 원고가 2017. 10. 29. 피고에게 입금한 위 1,000만 원이 원고의 D에 대한 차용금
원금의 일부 변제 명목의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점, ④ 원고가 2016. 3. 30.부터 2017. 10. 29.까지 피고에게 입금한 위 4,696만 원의 명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및 원금의 변제수령을 위한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및 원금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4,696만 원을 입금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희

1) [표 1] 기재 이 사건 차용금 9,076만 원과 위 1.의 나.항 기재 피고에 대한 차용금 530만 원(= 250만 원 + 280만 원)을 합한 금액

2) [표 2] 순번 1 내지 18 기재 각 금액의 합계

3) [표 2] 순번 19 기재 금액

4) 원고는 선행소송 제기 이후 D이 2017. 12. 28. 원고로부터 2017. 12. 27.자로 입금받은 1,910만 원을 반환하자 선행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18. 6. 21. 수원지방법원 2018금6281호로 1,910만 원을 D 앞으로 변제공탁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을 선행소송의 청구원인 주장사실로 추가하였다.